

제439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8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0)
3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9)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1)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3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4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상정된 안건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4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5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5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5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5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5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5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5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5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5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5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27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27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27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27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27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27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27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27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40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40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40
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41
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41
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41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46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46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46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46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46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0)	46
3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46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63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9)	64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1)	64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64
3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69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69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70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70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70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70
4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70

(11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소위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11시05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주에 강승규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공법인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임원의 선출방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13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법인 농업협법이 있으므로 별도로 임원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8헌바85 위탁선거법에 따른 농업협중앙회장선거 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시 각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회장의 피선거권도 현재 회원인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직선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적인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묶어서 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선거제도 개편 시 각 회원조합이 총회에서 지지 후보를 정한 뒤 조합별 1표를 합산해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방식은 한 조합 내에서 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 조합의 1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로서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회장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왜곡 문제 증폭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조합원 직선제의 취지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회가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용태 의원님 안은 기본적으로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직선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승규 의원님의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조합장 투표와 전 조합원 투표를 각각 50%씩 합산하여 회장을 선출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서 다양한 선거인단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인단의 구성 기준으로 인한 불안정한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해서 전체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의원안이 도입될 경우에는 조합장의 투표권이 과도하게 대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합장 1표의 투표권은 조합원 1690명 정도의 동일한 선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조합장 중심의 운영 구조를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합원 직선제의 도입 취지가 상충될 측면이 있고 또한 현재 조합장 중심의 선거제와 직선제가 가지는 한계 두 가지의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차관님, 좀 어이가 없는데요, 차관님 지금 분석에.

아니,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지만 우선 조합장,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사인 조합장의 선거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합성이나 이런 게 다 맞아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이 조합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조합원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선거하는 것은 조합원 한 표 대 조합장이 과다 계상된다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조합장이 선거하도록 돼 있는 게 중앙회장 선거의 정합성에 맞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조합원들의 뜻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50% 반영하겠다는 하는데 그것이 조합장 한 표와 조합원 한 표를 등치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게 지금 차관님의 논리이십니까?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게 이해한 게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조합장 한 표와 조합원 한 표가 조합장에 대해서 과다 계상됐다는 지금 차관님의 주장, 지금 얘기하신 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출안에 조합장 투표와 전 조합원 투표를 50 대 50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투표가 조합장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의 뜻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조합원을 또 별도로 선거를 해서 50%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로 하게 돼 있다고, 회원사가 조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농협조합장 선거를 그동안 한 것은 조합원의 뜻을 반하는 왜곡된 선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지금, 차관님이 억지로 해석하는 게 효율적이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합장이 과다 계상됐다며요. 그러면 조합장이 지금 투표권이 없었는데, 조합원 한 표 한 표 갖다가 다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혼자 다 자기 마음대로 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제도가 운영되어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안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조합장 천 백육 분과 조합원인 185만 명이 함께……

○**강승규 위원** 농협중앙회가 지금 회원사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1100명이 하는 선거가 잘못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강승규 위원** 조합장 직선제는 그게 지금 법에 맞는다고 차관님 혼자 주장하시고 그 조합장 직선제로 가야 되는데 조합장 선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조합원 한 표 한 표 줘야 되는데 조합장한테 반을 줄 경우 과다 계상된 거다 이 논리잖아요. 그게 맞아요? 차관님이 지금 입법 자율성에 대해서 입법부에,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조합장 중심으로 한 게 잘못됐다는……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고요. 지금 직선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 또한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이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본 위원도, 본 위원이 국회의원이예요.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조합원 한 표 한 표를 다 줘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장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50%라도 반영하자 하고 이 대안 입법을 낸 건데 그것이 일대일로 비교를 해서 하는 차관님의 그 분석이 타당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부 의견을 내요?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셨고 조금 이따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김용태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김용태 위원**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정부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의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훼손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농협이라는 것은 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재량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에 회원이 아닌 자한테 의결권을 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부처에서 지금 저희 의원실로 보고했던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중기중앙회, 생협전국연합회 등등 대한민국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협동조합이 있나요?

저는 지금 차관님께서 첫 번째 이유를 들어서 공법인 이유만으로 입법재량권을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입법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이 근간을 훼손하는 원칙,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법재량권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의결권을 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협동조합 중에 회원이 아닌 자한테 의결권을 주는 협동조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님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담당 과장님, 실무자분들 계실 텐데 의견을 한번 주셔서 속기록에 남겨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절차와 개혁도 회원이 아닌 자한테 의결권을 준다는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주문했었던 거고 제가 냈었던 대안이 아마 정부의 안이라든지 이 농협법의 개혁 취지를 담은 의원들의 취지를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세 번째 이유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차등의결권이라든지 선호투표제라든지 점수투표제라든지 이런 것 농림부가 방식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이지 단순히 왜곡이 있다라고 해서 이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납득이 될 수 없고요.

차관님께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얘기하셨는데 헌법 판결이 선거운동에 대한 방식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표결권을 주는 것까지 판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농림부라든지 민주당에서 농협법을 직선제,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표결권을 주게끔 강행한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적어도 국장님이나 여기 실무자분들 계시는데 국회속기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 두셔야 공무원분들이 나중에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것 5년 뒤, 10년 뒤 이 원칙 캐물어 가지고 이 후과를 다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농협법 이렇게 원칙 무시해서 통과되면 다음 수협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표결권을 주는 협동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또 하나의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의 취지, 농민분들한테 농협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를 만들려면 농민 1차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해서 회원자격을 만들게 하는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야 된다.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합원분들한테 중앙회장 선출권의 의결권을 갖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근간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이면 아마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담당 과장님들 5년 뒤, 10년 뒤 분명 이 후과 감당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회 회원이 투표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합원 직선제를 고민하는 일단 두 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에 조합원의 의사가 좀 반영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중앙회장의 선거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 조합장에 대한 농정활동비를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이런 조합장에 대한 선거공약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합원의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의 조합원, 일차적인 조합원의 의지라든지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1110명의 조합장들에 대해서 소수의 투표권자가 있다 보니 금권선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여러 가지 소문으로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권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화하자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김용태 위원님하고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회원이 아닌 자한테 선거권을 줄 수 있냐, 그런 사례가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협동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각각 그 발전의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현재 농협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강승규 의원님안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중앙회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강승규 의원님안 같은 경우는 조합장의 의견이 조금 과잉 대표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승규 위원님은 조합장 투표 그리고 조합원의 투표를 반반씩 섞어서 지금 하자라고 제안을 주신 부분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장 투표, 지금 현재 중앙회장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금권선거의 가능성은 그대로 열려 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직선제와 관련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직선제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조합원 선거와 관련해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했으면 좋

겠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지금 농협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령이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자기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김용태 위원님은 회원의 투표권을 인정해야 의원님안이 지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정합성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원님안이 조합원 직선을 일단 바탕에 두고 있는 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금권선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안은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의사를 수동적으로 좀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조합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저희가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문하세요. 그다음에 신장식 위원 하시고 또 하십시오.

○이개호 위원 이개호 위원입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원칙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조합장 직선제가 절대적인 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촌의 상황 또 농협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아주 신중한 문제이고요. 또 이러한 판단은 그 준거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의 논리에 우리가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중앙회의 구성요소다라고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원칙에충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검토를 해야 될 게 그 조합장을 선출한 사람들은 또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접적인 참여 방식에 의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여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떤 게 지금 꼭 맞냐, 원칙에 부합하냐라는 문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선거를 놓고 보면 미국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미국 국민이 뽑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미국 국민이 모두 투표하지요. 하지만 누구를 뽑습니까?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의 선출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조합원은 전체를 대표하고 또 조합장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

또 한 가지, 조합장이 중앙회의 구성요소이고 조합원은 중앙회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은 저는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실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조합원 직선제를 지금 농식품부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그러한 논리를, 말하자면 원칙에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차관이나 실장이 애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점이 많이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왜 직선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저는 법률상 쟁점 중의 하나는 이게 직선제를 하는 게 입법재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냐가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전에 2000년 6월 1일 날 선고한 99헌마553 결정에 따르면 중앙회의 법적 성격이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이랑, 단순한 사단법인이 아니냐라고 결정을 해서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목적 수행, 법률에 의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 언제든지, 농협중앙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이거는 입법재량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일찌감치 26년 전에 결론을 내놓은 거잖아요. 아까 그 부분을 설명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국제협동조합 규정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고 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이 아닌 인간에 의한 통제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는 사실은 대규모 금융 신용사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 의한 통제가 농협중앙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국제협동조합 규약을 말씀하시는데 국제협동조합 규약에 의해서도 조합원직선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거들이 있고 입법재량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중앙회 같은 경우 우리 헌법 제123조5항 보면 조합원 주권주의가 거기도 쪽 나온 단 말이에요. 농민들의 자조조직을 국가가 육성하게 돼 있지 단위조합의 연합체를 국가가 육성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헌법 제123조5항에 따르면. 그렇다면 조합의 주인은 연합체가 아닌 농민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 헌법에서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입법재량 안에 있고 국제협동조합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도 그러한 농민이 실질적 연합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된 만큼 빠르게 국회가 본인의 재량을 활용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농협법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 수준에서 일단 먼저 참석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한 걸 들어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방금 신장식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위헌·위법하지 않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과거의 판례를 보면. 그래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이 재량권 범위에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입법적 판단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느냐, 그 계기가 무엇인가, 사회적인 아주 강한 요구들이 사회로부터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정권의 성격상 우리는 이런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톱다운 방식으로 전 사회 구조를 내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여기에도 투영시키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입법 정책적인 원인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그냥 정권의 성격상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출발선이.

저는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왜?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성격이 같이 섞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제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로부터의 아주 강한 요구가 있어야만 입법재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 금권선거의 우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의 조합장이 천몇 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110명입니다.

○**이성권 위원** 하여튼 천백몇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성권 위원** 인원이 적으니까 대폭 늘리면 그러면 전국의 전체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투표 대상이 되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한 185만……

○**이성권 위원** 185만? 거의 200만 가까이 되잖아요. 늘리면 금권선거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동일하다면, 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런 조달할 능력을 가지면 1100명이 대상이 되든 180만이 되든 금권선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선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대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인원이 엄청 많지요.

그런데 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느냐, 그게 뭔가 하면 돈선거 때문에 그랬어요. 인원이 많아진다고 돈 쓴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앙회에 출마하는 회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조합장이 개별 투표권을 얻는 것,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 불과하지만 조합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느냐, 결국은 또 개별 조합의 조합장이예요. 결국은 돈 쓰려고 하면 그거는 또 씹니다.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될 수 있어요, 개별 조합장이. 이거는 뭐 가상의 일입니다만 자기투표권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발현하고 싶다 할 때는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금권선거 방지용이라는 말은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예요, 우리처럼 정치를 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 논리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에 조합장의 신분이나 처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합원들이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앙회장 같은 경우는 그게 견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데 있어서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직접민주주의에서 선택됐지만 국회의장은 간접민주주의로서 선출합니다. 아까 헌법 얘기하셨는데 우리 헌법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장도 전 국민 투표해야 돼요, 그 헌법을 논하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의장도 국민이 뽑아야지요. 그런데 왜 간접민주주의는 의장을 국회의원들이 뽑게 하느냐 하는 제도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회장선거를 그전에 해 둔 방식으로…… 특별히 바꿀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들어요. 만일에 부작용이 있으면, 조합장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소환제라든지 주민투표제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이런 제도를 관청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문제지 과연 이것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 게 맞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김용태 의원님이나 강승규 의원님 내신 그 방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문제의 출발이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가 기초지식이 좀 알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지요.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그랬고 지금 후반기 와서도 계속 농협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의견들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하게 될 경우 농협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산개발비랄지 밖에 있는 감사기구,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야 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하면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드렸던 게 피선거권의 정당과의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의 조합장, 어차피 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원 직선제가 됐든 조합장들 중에 나오실 분이 계실 텐데 정당 가입을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조합장들이 피선거권을 제한당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조합장들이 당원 가입이 다 돼 있어요, 권리당원이고. 영남 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정당 가입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정당 가입 제한을 두는 것은 없애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부칙이라도 개정 이후 첫 중앙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 조건은 현행하고 똑같이 제한을 안 두는 규정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예측 가능성을 두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간단히 답변 좀 드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협감사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감사 비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추가 발생한다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감면할 수 있고요.

○문금주 위원 감면이 문제가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만 전산감사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농협에서 있는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 사항을 농협감사위원회로 올린다면 별도로 전산감사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금주 위원 그게 안 된다던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피선거권의 당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게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다만 28년도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된다면 현재 3년 제한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으로 완화를 하고 그 이후에 3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안은 농협 측하고 더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이 먼저……

○강승규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우선 단답으로 대답 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께서 ‘공직선거’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농협중앙회장선거가 공직선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공직선거라고 하던데, 제가 메모해 났어요. 공직선거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농협중앙회장선거가 공직선거법에서 관리되는 선거가 아니지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교육감선거가 공직선거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서……

○강승규 위원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그래서 공직선거가 아니예요. 용어 잘 사용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 말씀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계속 제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 ‘공직선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직선거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농협이 공공단체예요?

차관님, 공공단체예요?

○임미애 위원 공법단체.

○강승규 위원 아니, 공공단체냐고 물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공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농협이 공법과 사법을 같이 혼용한 성격이 있지만 농협법에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협협동조합법에는 별도 법을 만들고 그 주소지까지 법률에 정하는 등 공법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공법인 성격이 있다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단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단체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행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공공단체 아니지요? 협동조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왜 그것 대답 안 하세요?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위탁하는 것은 단순히 위탁 대상이에요. 공공단체 등, 선관위에다 공공단체 등 또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농협이나 이런 것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공직선거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다. 단순히 위탁하는 선거예요, 그렇지요?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 선거인데 농협법이 공법 성격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입법재량 사항이다. 어떻게 정하든지, 국회 법률상 정합성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차관님이 그랬어요. ‘정합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공법 성격이기 때문에 입법재량 사항이다’ 그게 어떤 논리가 그렇게 되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국가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공직선거도 아니고 단순히 위탁할 수 있는 선거로 규정을 해 놔는데 농협조직이 공법 성격도 있다, 농협법이 공법 성격도 있다. 아까 개인 조합원의 탈퇴 이런 것 다 사법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을 공법 성격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입법재량으로 아무렇게나 직선제로 하든 간선제로 하든 입법해서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국가기관인 농림수산부의 입장입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두 번째, ‘조합장이 조합원 권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두 분이 다 썼어요, 차관도 쓰시고 국장도 쓰시고. 조합장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중앙회장이 조합장 연임제 공약을 걸고 100만 원 지급 공약을 했더니 이것은 조합원 뜻과 다르다. 그런 조합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중앙회장을 뽑으면 조합원의 권익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 단위조합장은 내가 연임제를 공약을 걸어서…… 조합원이 뽑아 줬어요. 그런데 그 조합원이 일부는 연임제 해도 괜찮다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고 조합장 연임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조합원의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조합장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연임제를 주장했던 조합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중앙회장을 뽑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단위조합장 선거도 직선제가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반영해야 돼요? 단위조합장은 직선제로 뽑고 있는데 그러면 단위조합장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않아서 중앙회장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 다라고 하면 조합장선거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단위조합장 직선제 아니고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정부가 조합원 뜻 반영 안 하면 건건이, 조합장선거 하더라도 정책 하나하나마다 다 투표해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그 논리잖아요. 조합장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합원 뜻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묻지 않고 중앙회장을 조합장한테 대표권을 준다면 그것을 반영하려면 정책 하나하나 다 의견을 물어 가지고 표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에요. 인정 안 해요?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까 김용태 의원 등이 입법에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선거예요. 농협중앙회의 회원사는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대표가 선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으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정합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제도로 했어요. 이개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라고, 자세히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선거인단 선거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쓰이고 있어요. 한 개 주에서 특정 후보가 이기면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리고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차관님이나 얘기 하시는 중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장이 선거인단을 해서…… 그 어떤 특정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의 뜻을 물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그게 한 쪽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선거나 이것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농림부가 그렇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 다시 써요? 어떤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길래 이렇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 다시, 선거제도를 다 다시 이렇게 써야 되냐고, 교과서를. 선거인단 선거도 조합원의 뜻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공직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차관과 관계 국장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보고 이해하라고 그래요?

제가 또……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

○강승규 위원 이것 3개 남았습니다.

제가 발의한 선거가 조합장선거……

○임미애 위원 너무 길어요.

○강승규 위원 잠깐만요, 이것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면 이 법은 논의 더 못해요.

조합장이 정합성 때문에 조합장에게 그렇게 대표성을 일단 주고 그래도 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합원들의 뜻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조합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게,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이 더…… 중앙회장 선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를 도입하는데 또 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온라인 선거를 좀 해 보자. 그런데 아까 관계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승규 위원이 제안한 것은 조합장 선거와 조합원을 같이 하니까 소위 비대칭성, 조합장의 유효 투표가 너무 과다 계상되고 또 하나는 비용이 든다. 그래요? 제가 비용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온라인 선거를 하니까 조합원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어찌고저찌

고, 기계 조작이 안 돼서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당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보다 지금 국회의원선거나 각종 공직선거에서 각 당이 후보자를 뽑을 때 온라인 선거를 다 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 선거의 온라인 유권자는 지금 농협중앙회의 유권자하고 다른니까? 달라요, 같아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만 있어요?

지금 온라인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각종 공직선거 등에서 쓰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그런데 중앙회에서 그것을 도입하면 어르신들이 투표를 잘 못 해요? 그게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안 돼. 주로 농림부에서 반대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요.

마지막 겁니다.

금권선거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100명의 한정된 숫자일 때 금권선거가 이루어진다.

금권선거 왜 못 잡아요, 지금은? 공직선거가 아니니까 못 잡지요. 공직선거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밥 한 끼 못 사잖아요. 그러면 조합장들은 왜 거기에서는 그동안 방치했어요? 그게 직선제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공직선거가 아니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방치하고 직선제로 가면 숫자만 늘어나면 금권선거가 없어진다? 처음 원인 진단부터 처방까지 맞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금권선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농협법에서 찾든 아니면 농협 조직을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서 공직선거에 넣어 버리든지. 오직 어떤 뜻에 의해 가지고 직선제만 도입하려고 직선제 논리만 맞추니까 해괴한 논리가 나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됐어요?

○강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측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예요. 위원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선관위가 지금 여러 위탁선거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초토화되고 있지요? 선관위 개혁해야지요, 지금.

그런데 이런 위탁선거들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저희 당에서 지금 선관위 개혁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선관위가 지금 직선제를 하려면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선관위가 해체될지도 몰라요. 또 이것을 선관위에 넘겨 놓으면 다 돼요?

지금 저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가 있을 때 6개월에서 8개월 전에는 다른 위탁선거를 못 하도록 법률 개혁안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 걸리면 내년에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한다. 그런데 내후년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 못 해요. 우리 당 안을 민주당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직선제가 그런 데서 만능도 아니예요.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기간도 필요하고 선관위에 이것을 다 담아내서 직선제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직선제가 만능……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했잖아요. 만능 처방전이 아니예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 좀 시간 두고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용태 위원님 하시고……

○임미애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하면 안 될까요?

지금 어차피 이 논의가, 오후에도 법안소위가 열릴 거면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야 돼 가지고, 자리를.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이렇게 하고……

○임미애 위원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까지 하고 할까요? 발언 중간에 갑자기 오셔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발언하고 그다음에 정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김용태 위원 윤원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조합원 의사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 우려에 대한 공감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농협법 지금 안대로 밀어붙이면 협동조합 기본법 13조 2항하고 충돌됩니다. 협동조합 13조 2항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그러니까 농협법 같은 거겠지요—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그 어떤 법에서도 회원이 아닌 자에게 표결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근간,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칙에 해당되는 것지요. 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해소하려고 회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직선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 적합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대안을 냈었던 것이고 제 대안도 국장님께서 고민하는 두 가지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다만 국장님께서 왜곡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왜곡 문제가 있다면 농림부가 대안을 찾거나 가령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지 회원이 아닌 자에게 표결권을 주는, 그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것을 밀어붙일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 묻고 싶습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표결권, 권리를 줬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의무는 없나요? 그러니까 출자금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어떤 금액을 내라고 의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무 없이 권리만 드리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농협이라는 것이 공법적인 성격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사법적인 영역의 성격까지 침해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아무리 공법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법적 성격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

고 있고요. 이 협동조합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하고 농림부가 고민하는 조합원 의사 반영 구조라든지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여가 여야 위원님들께 농림부가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냥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협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10명의 조합장들이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중앙회장을 선거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다양한 비리가 농민들한테 매우 큰 실망을 안겼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 주는 사건들이 수차례 일어나면서 농협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진정한 조직으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대신 아까 답변 과정 중에 표의 등가성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 회원 조합장과 일반 농민 회원들 간의 표의 등가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이것은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똑같아야지 이게 등가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등가성의 문제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단지 중앙회장을 뽑을 때 아주 최소 규모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인단의 규모를 키워서 더 많은 농민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논의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 저희가 직선제까지 논의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위원장님,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드러날 수 있는 우려되는 점들은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제도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된 내용들,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먼저 법리적으로 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중앙회의 구성원인 조합 그리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장 이 두 단계에 구성원

이 있는데 그 내용상 회원이 법적인 지위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성권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직선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결정 내용이라든지 공법인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입법재량이라는, 현재 결정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법인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적으로 정리하면 될 사안이다, 위헌적인 요소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나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었고. 그래서 강승규 위원님이나 김용태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선제적인 내용의 대의원단도 좋고 직선제 하는 형태도 미국식 간선제 형태로 선출방식을 좀 접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입법재량과 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실제 입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금권선거 문제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금권선거에 따른 비리 제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협감사위원회 내용의 형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직선제와 관련해서 중앙회장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선거권의 정당 가입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조합장의 정당 가입이 일상화돼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의 중앙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권선거와 관련된 내용,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세세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정리하고요.

간단히 조금 몇 분 논의 더 하시도록 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먼저……

○**이개호 위원** 오전에 제가 중앙회장 선출방식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 와요. 그러면 당신은 미국 대통령제처럼 간선제에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저는 직선제가 됐든 간선제가 됐든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택하든 간에 그게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점을, 간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제 선출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 수락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왜, 현재 결국 직선제가 됐든 간선제가 됐든 상황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 왜, 무엇 때문에 직선제가 필요한지, 직선제를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과거에 정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저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마는—그 당시의 입장은 직선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직선제를 수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면 왜 저 직선제가 필요하고 어떤 이유로 농민들한테 직선제를 제안할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 나가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직선제를 대안으로 낸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성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우리가 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그전에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건 21년도잖아요. 그전에는 대의원 간선제였지요? 대의원 간선제로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하게 된 이유가 농협에서의 그런 민주적 정당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이 많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내부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당시에는 농협 조합장님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요청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의원 선거인단은 몇 명 정도였던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290명.

○**임미애 위원** 290명.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조합장 선거인단보다 훨씬 더 적었던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중앙회장을 뽑는 데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자 그래서 1110명의 조합장 직선제로 갔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 21년도부터 시행을 해 보니 드러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선거인단 규모를 좀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직선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직선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반대 입장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미애 위원** 그때 제가 우려했던 건 선거를 치르고 나면 분명히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일선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뒤집

어진 사례가 꽤 여러 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법에 조합원에 대한,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농협이라는 것은 경제조직입니다.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잘 팔아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이익을 담당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런 경제조직이 지금 현재 조합원의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75세 이상이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배당에는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농협이라는 조직이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나 농지에 대한 투자나 영농법인에 대한 투자나 이런 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조직이 경제조직답게 기능을 하려면 실제 농업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전 조합원들의 직선제 방식이 서로 배치되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를 두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보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저는 직선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저희들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26년, 27년 2회에 걸쳐서는 특별히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회원 실태조사하면 조합의 자격을, 그 지위를 갖추지 못하는 조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거는 조합의 지위 문제일 거고요. 조합원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저는 나눠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에서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별도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걸로 제가……

○임미애 위원 별도로 논의하는 얘기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직선제 문제만 뚝 떼어 놓고 보면 사실은 조합의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개혁안이야’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과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정비 조항을 법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잠시만 설명 간단하게 올리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25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저희 작년 국감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중앙회장이, 조합장이 선거하는 구도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운영 실태 자체가 농민 조합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조합장을 위한 공약이 있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협 감사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때 제

도개선을 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앙회장 직선제, 내부 감시 통제 장치, 의사결정 체계 이런 걸 건드렸고 2단계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경제조직 활성화, 농협 통폐합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중앙회를 어떻게, 중앙회장을 뽑는 과정에 지금처럼 최소화된 선거인단을 가지고 뽑는 방식이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차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선거인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맞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직선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여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판단을 존중하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먼저.

○김성범 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회장의 선거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느냐, 입법 정책적인 재량 사항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논리대로 충분히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적인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직선제를 화두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직선제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충분한 공감대와 설명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방금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올해 넘어오는 감사 결과라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그때 감사 결과 발표하면서 충분히 알려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던 분야인데 어렴풋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정도라는 말이지요, 정부에 있던 저도. 과연 일반 국민들 또 농민들이 얼마만큼 알겠냐 하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선제를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숙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위탁 관련 규정들을 제가 선관위법 그다음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등 관련 법률을 쭉 찾아보니까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준용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없는 걸로 일단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선거비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어쨌든 만약에 전국적인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규정들이 마련이 돼서 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된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좀 정리를 해 보면서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우선 저희 당이나 저도 중앙회장의 선거 방식과 조합원의 어떤 대표성 그리고 또 조합원의 여러 가지 이익이 반영되는 농협 조직 그런 측면에서 개혁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개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조직 내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등을 다 감안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또 조합의 여러 가지 조합원과 그 기구의, 조직의 여러 가지 대표성,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냥 직선제만 했을 때는 나중에 무수히 많은, 지금 임미애 위원도 지적하시고 이개호 위원님도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나중에 후유증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정리 그냥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적 정합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 나중에 위헌 소송감도 됩니다. 조합장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조합원이 할 수 있느냐 협동조합의 회원의 자격이 조합장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법률의 위헌 소송감도 되기 때문에 정합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냥 공법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입법 사항이다, 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드리고.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얘기했던 무자격 조합원 문제도 똑같이 이것도 나중에 수많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또 차관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자격 조합을 박탈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무자격 조합을 지금 그렇게 계속 조사를 해서 정부가, 농림부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실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나중에 소송이 진행됐을 때 소송에서 정부가 한 그런 것들로서 면피가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이 또한 아까 차관께서는 등가성 문제를 대의원 성격의, 제가 혼합 방식으로 제시한 조합장을 50% 반영하고 조합원을 50% 온라인으로 반영했더니 조합장과 조합원의 등가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까 임미애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등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대의원 성격의 조합장을 조합원과 비교해서 등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등가성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만약에 조합원 직선제를 했을 경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한 부부가, 두 명이 조합원이다 그러면 6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A라는 부부, 두 명이 단위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2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품목농협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품목농에서 2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품목농에 2개도 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2표가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다음에 축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미니멈 6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선제를 했을 때 1표로 해라, 1인 1표 해라 그러면 두 부부에게는 2표밖에 지정이 안 되면 당신은 단위조합의 대표성을 가질 거예요, 품목일 거예요, 축협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사과농협에서 활동을 하면서 축협에 가입하면 거기에 있는 표를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등가성이에요. 그것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실제 그런 6표를, 제가 어디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6표가 있다 그러더라고, 6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선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그것도 정리하겠다, 1인 1표 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데에서 훨씬 더 등가적인 문제가, 어느 지역의 어느 조합의 대표를 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성인데요. 지금 계속 직선제를 고집하니까 조합장의 대표성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아까 또 이렇게 표현하대요.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하니까 조합장의 이익, 조합원의 이익과 반하는, 연임제라든지 조합장 이익에 관련되는 공약을 내건다. 그러면 조합장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합장이, 단위조합장이 조합원의 대표로 뽑혔다 하더라도 연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조합원 이익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거네요. 그러면 그런 조합 제도를 두면 안 되지요. 단위조합을 없애 버려야지, 그냥 중앙에서 다 관할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조합원들의 이해가 충분히 다 한 조직에서 반영되지요.

중간에 단계적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그 뿌리에 있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조합장의 이익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제로 해야 한다. 그러면 조합장의 대표성을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선거 제도를 통해서 뽑아 놓고. 그래서 직선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돈 선거, 혼탁 선거 줄이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수십억 오고 간다 그걸 줄이자 한다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님도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기 하면 직선제가 어렵다고 그런 입장을 가지셨다고 아까 고백까지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임미애 위원 개혁 의지를 받아 주자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개혁 반대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개호 위원님은 이것을 설득을 하라는데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확하게……

○소위원장 윤준병 얘기가 나왔으니 임미애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임미애 위원 저를 끌고 들어가시면, 제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려가 나타나는 거여서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농림부가 중앙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의회에서 좀 받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정도 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논의도 하고 했던 내용은 오늘 결론을 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들었었는데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됐고 또 강승규 위원께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음 결정을 하더라도 오늘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일단은 오늘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소위에서는 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은 지고지순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모순을 제도를 통해서 최대한 극복해 내고 개선해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또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과 관련된 내용, 그동안 농협 개혁, 중앙회장 대표성 확보한다고 해서 소수의 대의원단도 구성했고 또 지금처럼 천백여 명에 해당되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투표권을 부여하고 일부 가중치를 두어서 하고 있는 내용도 조합장 직선제라는 방향으로, 이것도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돼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선제로 시행된 현행 중앙회장의 역할이나 중앙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모순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중앙회를 비롯해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농식품부의 종합감사 결과 나온 여러 가지 비리나 모순들 이런 걸 극복하려면 현행 체제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뭔가 제도를 해야 된다.

특히 그동안에도 소수를 늘려 가는 대표성을 투표권을 통해서 해 왔지만 여전히 금권 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그 금권 선거는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의 논공행상에서 이상한 형태로 또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나 예산 관계나 여러 측면에서 모순을 자행해 왔던 것이고 또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그 모순들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고질적인 구조적인 행태 때문에 그걸 개선하지 못해 왔던 내용이 현재까지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회장의 직선제 문제라든지 또는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의제가 제출됐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개호 위원 다음번 소위 때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전제로 차관께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정관을 계속했을 경우에 노력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사전에 보고를 받고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이개호 위원님이 주셨던 주문, 꼭 국민을 상대로 말씀하는 논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일단 입법안을 정리하는 위원들부터 이해가 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논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제삼자나 국민들께, 조합원들께 얘기해도 그것 나름대로 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고충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는 정리를 해서 다음 2주 후 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7)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1)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1)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6)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19)

(14시40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8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4건에 대해서 주문별 검토가 있으셨는데 그 조문을 3건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및 지원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농어업인인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농어가의 종사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인 농업종사자 또는 어업종사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실제 농어업 경영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단순 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온 여성농어업인의 제도적 지위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관 확대 및 요청 자료 명확화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명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연계 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쪽입니다.

예비농어업경영체 정의 신설과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기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동경영주 등록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의 등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경영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관 확대와 요청 자료 명확화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자료제출 기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제공해야 되는 것을 명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1번이요, 후계농법에 농업 종사를 준비하는 자가 이미 예비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농업인들이 후계농에 포함돼서 어떤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을 낸 이유는 제가 볼 때 당장 들어오자마자 곧 바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후계농 신청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비농 제도를 두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혹은 농업 노동자로 종사를 하면서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일정한 기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법안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후계농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후계농의 정의라든지 청년농어업인 정의에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 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경영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정의에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아마 임종득 의원님 안은 예비농어업인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계농법에 근거를 두고 내년도 예산에 예비농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계농법에 따라서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예비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책과 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이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비농에 대한 것은 되게 현장에서 정착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비농 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가장 큰 것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농업인수당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동경영주는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인수당은요 농가당 지급되기 때문에 농업인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이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는 데에 이걸 굉장히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지금도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왜 안 하나? 한들 어떤 정책 대상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 뒤로 공동경영주 등록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낮아서 제가 한때 도의원이었을 때 대대적으로 이것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등록비율을 겨우 30% 정도까지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경영주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도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거다. 그리고 농민수당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농가당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동경영주든 그냥 경영주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개인별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단체하고 만났었는데 지속적으로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주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개 안 된다니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공동경영주와 관련해서 사실 이걸 등록을 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래에는 공동경영주라고 하는 게 농예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여러 문제가 되어서 공동경영주로도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농업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면서 농예소득과 관련된 일정 부분을 허용하면서 지금 공동경영주 등록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미애 위원 지금 5700만 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예소득.

○임미애 위원 2000만 원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미애 위원 아니, 그 기준이 되는 게 그전에는 3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소위원장 윤준병 4800만 원으로 조정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000만 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2000만 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예 근로……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농예소득과 관련된……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예비농업경영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귀농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귀농하는 분들도 나중에 후계농이나 이쪽에 다 포함돼서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귀농과 관련해서는 귀농과 관련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임종득 의원이 낸 법안의 예비농업경영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의원님의 취지는 후계농업인,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농촌에 정착하기 전에 기반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지원을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들이냐고. 지금 임종득 의원이 낸 그런 예비농업인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하고 여기에 한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귀농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귀농인은 또 다른 귀농 특별법이 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월 최대 한 11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한 2000명, 3000명 정도 매년 받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의 한 80%가 농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를 사고 영농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그전에 충분히 학습을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예비농업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내년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됐어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상,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7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을 요청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경영체의 사망, 주소변경 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명확한 경우 변경등록 요청 없이 직권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응답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등록정보의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직권조치 확대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경영주 사망 또는 거주불명 시의 말소 사유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대상을 등록정보가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경영주 사망 시에도 실질적인 영농을 지속하는 가족 경영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고 농어업인의 불편 해소 및 등록정보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근거 및 절차 마련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요청 시 요청 근거, 정보의 내용, 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명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활용성 제고 및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7쪽입니다.

등록정보의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직권조치 강화 부분입니다.

수용합니다. 등록정보 조사·확인 후 공적정보와 다를 경우 농어업인 변경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치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등록정보의 조사·확인 결과와 다를 경우 직권조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등록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를 경우 직권조치를 정정하여 농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근거와 절차 마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어서 말씀……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4쪽입니다.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확대입니다.

이원택 의원안은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이원택 의원안 제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실제로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 성격의 주체가 포함되므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8번 농어업경영체 공급망 안정화 조치 지원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공급망 위협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자재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자재 등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망 위협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개정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9번입니다.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에 대한 특례 부여입니다.

주철현 의원안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5인 기준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업인 가족 경영체도 법인 설립을 통해 농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미를 좀 명확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4쪽입니다.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부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어업경영체 공급망 안정화 조치 지원 부분이 됩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급망 안정 관련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년 12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3인 이상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부여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농법인의 구조 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29페이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법안 할 때 5인이었던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3인으로 줄이면 혹시

무늬만 영농법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5인을 기준으로 있는데 가족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자 하는 게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살펴본 이후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쪽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안은 영농조합법인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기반 확충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영농조합법인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량 및 매출액 등 일정 부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11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농업법인 소유 유희부지 임대 허용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농업법인 등이 전용 농지에 지은 건축물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기반 확충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농업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농업법인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 연번 12번입니다.

농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및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주철현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업법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업법인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원활하게 제공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런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1쪽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법인의 운영 주 목적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변질되는 등 농업법인 제도 운영 취지가 다소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농업법인 소유 유희부지 임대 허용이 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서 영농형 태양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 운영 목적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변질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영농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와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정보 또한 필요하므로 제20조의6 제3항 정보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이 있으시면……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영농형 태양광법에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나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농형 태양광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농지에만 되어 있어요, 땅에만.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영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지붕에 얹는 태양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농법인이 대규모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창고에 태양광을 얹더라도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사업 내용에 넣은 이유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거는 자가소비용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넓은 창고에 이만큼 얹어야 돼요. 전체 지붕에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자가소비가 아니라 넓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서 자가소비를 넘는 것은 한전에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농법인이 태양광 사업만 하고 영농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이 금방 가능합니다. 그 창고가 영농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영농법인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농법인이 자기 고유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송배전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영농형 태양광

처럼 끊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붕이 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 영농법인에서는 이 놓고 있는 지붕에 우리도 태양광 사업을 내서 적어도 경비는 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를 한 건데 지금 이거를 영농형 태양광법에 할 수 있으니까 해라, 그걸로 해라라고 하는 건 땅에만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법은 지붕에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의 내용이 다른데 이거를 신중검토하는 건, 지금 농촌 지역 거리에 가 보면 그 지붕이 놓고 있는 거를 하지 마라, 놀게 되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취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35쪽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임미애 위원** 어디에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잉여전력 거래 이쪽 보시면 부대사업으로는 수익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넣을 경우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짓고 지붕의 이용권을 위해서 관련 창고들이 좀 무분별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문금주 위원입니다.

차관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인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우려인 것 같은데요. 태양광 설비 그것 짓는다고 창고를 무분별하게 짓고 그러겠습니까? 좀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농업소득 외에 부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요. 찾아 가지고 열어 줘야지, 규제를 풀어 줘야지. 지금 이런 수요가 많아요. 요즘 특히 전남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높아져 가지고 양식장 지붕에도 좀 한번 해 보고 싶다 또 축사나 이런 부분들,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풀어 준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전력 계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주고 나서 그때 문제 생기면 충분히 그때 가서 제재나 단속을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정부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태양광의 설치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행,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아닌. 그런데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나 문금주 위원님 등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법인을 통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시행령 등에서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게 당초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농업법인들이 이거를 악용해서 상당한 태양광 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농촌 지역에서 다른 일반 농민들과 주변 주택가와 굉장히 상당한 분쟁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현행에서도 상당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정리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실태조사를 22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사례를 보면 저희들 기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불법·부당한 집행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표본조사를 했었는데 불법·부당한 사례가 2267건이 적발되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신 것 중에 2267개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었다면 불법 사례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보셨나요? 이게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시설을 해서 발생한 문제와 정착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발생했던 문제 이것 유형을 분류해 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유형까지는, 국조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여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을 설치할 때……

○임미애 위원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왔고 그 사례의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지인이었다라는 거를, 그 동네에 들어가 보세요. 그 지역 주민이 아니었어요. 다 외지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고, 실제로 그 시설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건 농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법을 통과시킬 때도 농지에만 하는 것으로 했고 제가 분명히 지목의 ‘나’에 해당하는 유형에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건물에 지은 것, 구조물에 태양광 올린 것도 농식품부가 관리해야 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어려우니 나는 안 하고 ‘가’목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차관님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본인들이 관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2200여 건이 발생한 건데 그것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라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이 한 게 아니라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했을 가능성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영농형 태양광법은 한 번 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조물에 설치한 것도 농식품부가 관리 주체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관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 생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걸 일단 뒤까지 설명하고 처리 문제는 좀 이따 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40쪽입니다.

연번 13번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 및 지원 사항입니다.

임종득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농업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체계상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의3 제5항 뒤에 해당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4쪽 14번 부칙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시행령 정비 등 법 시행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0쪽입니다.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 및 지원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공동농업경영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부칙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가 됐던 10번, 11번 정부 측은 지금 현재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100분의 30 이하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35쪽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 비율을 저희가 정한 것은요, 일단 농업법인의 본연의 역할은 좀 충실히 하고 부대사업으로 하라는 취지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100분의 30이냐, 왜 100분의 20도 아니고 100분의 10도 아니고 100분의 40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임미애 위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저희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행령 이거는, 이 내용을 법제처 심사 받고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된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보류했다가 할까요, 대안 처리로 다 해 놓고 추후에 한 번 더 발의 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추후에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보류 좀 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만 가지고 보류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대안 처리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발의하셔서 하시도록 하시지요.

○문금주 위원 또 발의를 해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두 분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처리하시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이 그러면 언제쯤 다 통과가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당초에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시간을 좀 지체를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 시행령 처리도 처리지만 국조실에서 점검했다는 것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단속하기 위한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농림부에서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농법인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점검하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농림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면 진짜 우후죽순 난무하겠더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농업법인 입장에 서서 규제를 좀 풀어주면, 아니면 자가용으로만 하게끔 한다 할지 뭔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할 테니,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 줘 보세요.

차관님, 점검 한번 다시 한번 해 줘 보시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두 분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31)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81)

(15시18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심사자료 3권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지 않아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정원 확대 및 구성 변경입니다.

윤준병·서삼석 의원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면서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농어업인의 삶에 관련된 부처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지역 위원 5인 증원, 서삼석 의원안은 당연직 위원 3인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안은 지역 위원을 2인 추천하려는 취지로 파악되므로 위원 정수를 총 5인 확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삶의질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어업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삶의질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전국적 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번 농어촌학교 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 관련 지원 시책 마련입니다.

김용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 등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특별히 별도로 명시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부칙입니다.

삶의질위원회 정원 및 구성 변경은 즉시 시행하되 방과 후 교육 관련 사항은 지자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쪽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정원 확대 및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기예처, 금융위, 공정위 추가와 지방 협의체 추천인사 위원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관련 지원 시책 규정입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 쪽, 부칙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5)

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17)

(15시23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4권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이 길지 않아 2건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연번 1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대한 전출 근거 마련입니다.

이개호 의원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전출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계정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등의 소득 보전,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 중에는 지자체의 자율적 편성보다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와 기능 조정이 중요한 사업으로서 존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운영, 특정한 자금 보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수용 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각 계정의 세출사업에 해당하는 조문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영환·문금주 의원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농특세계정의 재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 및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쪽입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대한 전출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미래대응기금의 세출 사업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특세 세출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농특세 세출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할 수 없다는 농림부 입장이 재정 부서의 입장입니까? 혹시 농특세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특세는 증권거래세하고 많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번에 넣은 건 사실이지만 제한돼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다양한 세원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원 확보 안정성 측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당국에서 그 취지에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농특세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이 더 적합하다는 얘기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미래대응기금 세출 사업으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더 적합하고 농특세에서 기본소득을 세출에 추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농특세의 목적이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는 쓰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그 뜻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농특세가 지금 남아돌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정부가 이걸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의 농특세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농업 분야에 쓰이는 걸로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에 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동안 기금 결손난 부분도 정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쓰되 그 기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은 지금 어떻게든지 정부가 편성한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농특세 남아도는 예산을 세출에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쓴다고 하면 농어촌지역이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주장한 바 있는데 고령 농업인들의 직불금을, 직불금 수령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도 못 하는 이런 분 등에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농특세를 다른 목적으로 가져가고 어찌고저찌고 할까 봐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세원 자체는 농특세를 활용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에 하되 지출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하여튼 농특세는 예전에 일반회계나 이쪽에서 가져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든지 하는 과정에서 농특세는 전혀 거기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농특세는 고스란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다가 세원으로 전부 집어넣는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에서 일단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더라도 그거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이 전 전출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우리 농특세 재원은 제대로 확보해서, 이번에 재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농특세도 늘어나지만 그 내용은 우리 농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주머니를 확실히 별도로 담보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차관님이 아까 설명한 건 차이가 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야 제가 알아들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게……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거지요,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전 지출이 아니고 그냥.

○강승규 위원 예.

○이개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아예 농특회계에서는 앞으로도 안 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가 빌려줘서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우리는 이자 받고 빌려주고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미래대응기금에서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을 그냥 여기서 수용을 안 했다고 해서 털어버리지 말고 여지는 어떤 식으로든 두고……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이개호 위원 후에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우리가 농특세 사업의 지출내역에 세출 내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미래대응기금?

○임미애 위원 농특세.

○소위원장 윤준병 농특세? 예.

○임미애 위원 농특세 계정의 세출이 굉장히 많아요, 세출 내역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본소득은 들어가지 않지만 기본소득은 아까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을 하되 여기 내용 중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농특세에서 지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려가 되는 건 농특세의 고유의 목적 지출을 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위축될 여지는 없나요?

농특세 사업 내역에 보면 세출 내역이요 일단 건강보험료, 농민·어업인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사업이 위축되거나 이럴 여지는 없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농특세로 걷힌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돈을 기본소득하라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기본적인 사업은 우리 농특세 세원으로 하는 지출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축소될 여지는 없다 이런 얘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얼마 걸렸나요, 우리 농특세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올해 예산이 7월 기준으로 13조……

○임미애 위원 13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걸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평년에는 8 내지 9조 정도……

○임미애 위원 8~9조 정도. 그러니까 4조, 5조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됐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요아니요. 제가 농특세 추가세수가 걷힌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일부 쓰여지는 것, 미래대응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특세로 걷힌 추가세수 내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농지 전수조사를 했고 현장에서 농지를 팔 수가 없으니 농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장기적으로 국가 비축 농지를 늘리고 농장 단위로 규모화해서 청년농들을 육성하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투자에 좀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추가세수를 걷힌 내역이 모두 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소득에 쓰이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세수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최대한 편성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지요, 최대한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했으면 이후 대책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세수 걷힌 것을 모두 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과정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일단 제도적인 틀은 이렇게 입법적으로 만들고 이후에 구체적인 기금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닌데 잘 몰라 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2026년 올해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했지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쟁점은 오히려 조금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본 사업으로 할 거냐가 계속적인 토론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게 농어촌특별회계냐 그다음에 아까 미래대응기금 이렇게 좀 쟁점이 두 가지로 나뉘질 것 같은데 저는 좀 학습하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가 제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나요? 확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 기초를 해야 될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평가는 경사연 중심으로 관련 전문 연구기관들 공동으로 효과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연구는 2년간 연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권 위원 2년간 연구사업을,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과

정에 시범사업에서 더 확대를 대폭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나오신 시장·군수님들께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현재 몇 개월 시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확대가 조기에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기초해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반에 대한 토론하고 달리 어떤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좀 세심 있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77)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60)

3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15시37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6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5권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심사경과에 농어촌정비법 6건과 도농교류법 1건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제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정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대림·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비소유 주택과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이고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농교류법에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민박의 조식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식 외의 식사 제공도 가능하도록 하며 준농어촌 및 농어촌주택 정의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현행 대비 변경하고 있는데 주택 소유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방치된 빈집이 민박사업에 활용되도록 하며 조식 이외의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민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빈집은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부속 건축물로도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주택이라는 용어는 현행법 및 개정안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했습니다.

3번, 이만희 의원안에서 용어 사용빈도가 높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추가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어촌주택 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에서 제외된 준농어촌지역 등의 소재한 빈집을 빈집 재생 민박사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빈집에 대해 법에서 직접 정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요건입니다.

가, 농어촌민박의 등록입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 보시면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등록 기준을 점검하거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취지이고, 정부안은 농어촌민박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변경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농

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숙박업 등 타 숙박업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보았습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범위와 일치하도록 약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등록 요건입니다.

1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직접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규모·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5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 약화와 타 숙박업종의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만희 의원안은 등록 요건에 실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안 제2조는 농어촌민박 사업에 실거주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등록 요건에도 실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만희 의원안은 주택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미제정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대림 의원안과 같이 부령으로 기본 기준을 정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이만희 의원안 제6항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위임은 다른 조항의 위임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8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촌민박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급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등록(신고) 요건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설비기준은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준 통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객실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농어촌민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록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은 유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11쪽에 타 숙박업종의 피해 발생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말씀을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되면 일반 숙박업소에 서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농어촌민박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자 등록하고 과세 대상인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정확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면적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과세 대상인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면적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230㎡를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왜 타 숙박업종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동일 지역 내에 민박이 활성화된다면 기존에 소위 말하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로 규모를 더 풀 수 있게 저희가 해 놓 으면 굉장히 좀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들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그런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우려인가요?

저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규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에 안동에서 농어촌 민박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지금도 장애 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 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할 때 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 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시설과 관련된 규제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시설규제 있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뒤편에 보면 관련……

○소위원장 윤준병 시설규제하고 객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규모, 객실 이 두 가지 요 건들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뿐만 아니라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전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서 안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결격사유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투숙객의 안전보장 필요성과 함께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를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입니다.

개정안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구 근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시·군·구청장이 결격사유를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요구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결격사유 중 성폭력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는 결격기간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로 보았습니다.

넷째,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농어촌민박 특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어촌민박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쪽, 연번 4번 폐업 후, 동일 사업장 등록 제한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등록을 금지하는 것으로 휴가철 등에 일시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한 후 폐업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문구만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등록할 수 없는 제한 대상이 ‘자발적 폐업을 한 자’인지 또는 ‘누구든지’인지 불명확하므로 개정 취지를 확인하여 제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무분별한 단기 영업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3쪽, 5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정보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이관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으로 등록한 상호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간판, 홍보매체 등에 등록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4쪽, 조식 이외의 식사 제공입니다.

윤준병·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 이외의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윤준병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식 외의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정보법에 규정된 조식 제공에 관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관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 외의 식사도 제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요성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농어촌민박 투숙객의 편의 제고, 민박업자의 소득 증대, 조식 이외의 식사 제공 가능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의 형평성 제고 가능 등을 보았습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농어촌민박 주변의 음식점 등 지역상권과의 충돌 우려, 일반음식점업의 엄격한 규제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인한 안전관리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조식만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향후에도 조식만 제공하려는 경우 에까지 시설, 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신설한다면 의도치 않게 기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한편 이만희 의원안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의6의 의제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그 밖의 내용입니다.

38쪽을 보시면, 등록증 및 요금제 게시. 2번, 숙박요금 신고·준수 및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변경 금지. 세 번째,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이수. 네 번째, 매년 1회 안전점검 실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통신중개판매업자에 대한 농어촌민박표시 의무는 다 41페이지의 조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4쪽입니다.

조식 이외의 식사 제공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민박 활성화를 위해 조식 외의 식사 제공 관련 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식약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접객업 관련토록 적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7쪽입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증과 요금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시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실정에 맞게 교육 주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준수할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 변경을 못 할 수 있는 금지의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질문인데요, 만약에 조식만 줄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정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조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아니어도 된다는 거지요? 조식만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식사로 바꾸는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런데 다만 시장·군수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인용한다면 식당과 같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적용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특례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49쪽입니다.

연번 6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투숙객 대상 조식 외 식사 제공을 허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신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조례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식품접객업을 의제하는 방식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했으며 식품접객업 의제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의제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52쪽입니다.

미등록자의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미등록자의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제한 및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3쪽, 보험·공제 가입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보험·공제 가입 의무규정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55쪽입니다.

사업의 승계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하던 주택은 구조 등으로 인하여 민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매매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승계자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완화된 시설기준 등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민박을 경영하였더라도 상속인이 현재의 기준에 맞게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지 않고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존 사업자 보호 필요성과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사업의 승계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입지 변경 등 환경 변화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생계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어촌민박의 상속 승계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57페이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별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도·감독 규정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8쪽입니다.

영업정지 등입니다. 현행 규정을 위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여름 휴가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데 기간 단축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 입법례에서 영업정지 등의 사유는 대체로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등록제 도입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63페이지, 숙박 요금 미신고, 미준수 및 일방적 예약 취소·변경입니다.

문대림 의원안은 숙박요금 신고·준수 및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변경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이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사업 금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4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의 사업 금지에 관한 사항을 보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폐업을 한 장소에서는 1년간 이 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한 장소에서는 6개월간, 그중 성범죄로 통보를 받은 경우나 불법카메라 설치 등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장소에서는 1년간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사업장에서는 6개월간 사업을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사업장에서는 1년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등록)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11조의3은 이 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2년간 결격사유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1조의12제3항에서는 불법카메라 등 설치, 성폭력범죄 등의 통보로 등록 취소된 자에 한하여 2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개 조항의 적용범위가 중복되므로 조정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은 미등록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자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미등록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명령 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폐쇄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한편 법체계적 측면에서는 안 제11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뿐 아니라 사업장 폐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해 보이고 폐쇄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12제5항 및 제6항은 등록 취소 등의 처분과는 구분되는 조치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58쪽입니다.

영업정지 등 현행 규정의 위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발생할 어려움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미영업기간은 현행 1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등록제 도입에 따른 사항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등록제 변경 및 결격사유 신설 등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사유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사유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63쪽입니다.

숙박요금 미신고, 미준수 및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촌민박 이용 소비자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숙박 요금 미신고, 미게시, 미준수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 사업 금지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사업 금지 기간을 유형에 따라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74쪽입니다. 연번 12번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서명옥 의원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폐쇄·사업정지 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미신고인 경우 통신판매 의뢰 내용 삭제 및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미신고 숙박업으로 보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걸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74쪽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보아 공중관리법의 근거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현재 처벌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통신판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부 확인 등 의무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79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신설입니다.

정부안은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업장 폐쇄명령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실상 사업의 영구정지를 의미하므로 부적격자의 탈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규정을 도농교류법 대안에 반영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사업장 폐쇄에 따른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신설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확인증 반납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83쪽입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84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계 대상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처분효과의 승계 대상을 폐업신고 후 해당 사업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로 규정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여도 적용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승계 유효기간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정부안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의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은 처분이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

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문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계하려는 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이력을 알기가 쉽지 않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행정제재처분 확인 이력 요청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9쪽입니다.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문대림·이만희 의원안은 실거주 요건이 없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당초 농어촌민박이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어 시설 기준 등에 혜택을 부여한 취지와 법인 진입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인·단체의 자본금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법인·단체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농어촌민박사업이 대규모 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음, 관리자의 지정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타지역 거주자 또는 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부채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근거 마련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대규모 자본 유입, 독점 최소화를 위해 빈집재생민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관리자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민박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사업자 지정 근거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를 1인 이상 두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상주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해당 빈집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자가 주택에 상주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빈집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자가 주택이라는 말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간 상주하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관리자를 그냥 지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만 해당 시군구나 일정 거리 이내 주소지를 하는 사무소라든가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저희들이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에 이 규정을 명확히 한 이후에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해서 추진할 거고 하위법령으로 만들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나 일정 거리 20km 이내의 주소지를 하는 사무소 그다음 상시 인력이 있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거는 의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두었을 때 처벌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고 거리는 20km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는 규제샌드박스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4쪽입니다. 연번 16번 민박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입니다.

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은 해당 단지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주체와 객체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민박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촌민박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농어촌민박단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8쪽 연번 17번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도농교류법에서 약칭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정한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약칭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주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등급 결정 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가능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01쪽입니다. 18번 자료제출, 보고 또는 출입조사·검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보·보고 및 출입·검사의 주체로 등록권자가 아닌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비하여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카메라 설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자료제출, 보고 또는 출입조사·검사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출입검사 실시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05페이지입니다. 19번 청문 및 수수료입니다.

청문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등록취소 및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시 청문을 거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부분입니다.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필요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결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청문·수수료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어촌민박 등록제 변경에 따라 등록 취소, 농어촌민박단지 지정제 도입에 따라 지정해제 관련 청문 실시 사유 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야 될 거 설명 열심히 하고 설명 안 해도 되는 건 넘어가요, 시간 잡지 말고.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09쪽입니다. 연번 20번 벌칙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이만희 의원안 제2호 등록·변경등록을 한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둘째입니다. 이만희 의원안 제4호 상속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승계 후 등록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만 하여 수정했습니다.

셋째, 이만희 의원안 제5호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되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이만희 의원안 제5호의 등록취소 후 사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벌칙 조항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등록제, 상속, 빈집 관리자 등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16쪽입니다. 연번 21번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사업장 폐쇄·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데 예약의 일방적 취소·변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사업장 폐쇄·영업정지 처분 외에도 위반사실 공표의 제재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숙박 예약의 일방적 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0쪽입니다. 양벌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은 개인·법인 이외에 단체도 가능하므로 양벌규정 주체에 단체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양벌규정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22쪽 연번 23번 과태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나 불법카메라 설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형평성을 위하여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과태료 조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6쪽 연번 24번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현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 실익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8쪽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법률 숙지 및 하위입법 준비를 위한 측면과 공포 후 1년의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고려하였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법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새로이 등록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법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등에 침해를 발생시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등록증 게시 의무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용례입니다.

신고확인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만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일부 누락된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도록 해당 법률 개정·제정·폐지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부칙 조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국민분들의 충분한 숙지 기간을 위하여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131페이지부터는 조문 정리를 해 났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촌민박 관련 부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관련 부분 등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9)

3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1)

3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4)

(16시17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7항까지 4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6권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병해충위험분석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식물검역에 대한 국회의 점검 강화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병해충위험분석의 건별 보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병해충위험분석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병해충위험분석은 국제기준과 국내법에 따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임의로 생략·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 보고의무 추가 시 상대국이 정책적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페이지……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미애 위원** 이해가 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게 발언 기회……

○**임미애 위원** 저는 수용 곤란이라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국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유가 있는 건데 국제법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탄지를 걸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이만희 의원의 경우는 그런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발의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그러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회와 이 문제를, 정보를 교류하겠더라든가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저희가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국회와 어떻게 정보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은 이만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수입 관련 검역 자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 말로 동의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위원장 윤준병** 이 건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 등 목적 병해충 이용근거 신설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는 자를 연구소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허가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함에 따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하여 시험연구·약재생산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방제 효과가 증대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용 목적입니다.

이용 대상이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제약제’로 규정하고 검역 대상 병해충과 같이 ‘농업유전자원 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시험연구 등 목적 병해충 이용근거 신설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0페이지 병해충 이용 관련 의무 및 세부절차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 관리를 위해 유출·반출·폐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 종료 후 폐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부절차 하위법령 위임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고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폐기방법 등 위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해충 이용시설의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 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병해충 이용 관련 의무 및 세부절차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폐기하지 않는 자에게 폐기명령을 통해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의 허가 절차·방법 이외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염원 불분명 또는 예방·치료 불가 시 국가의 방제명령 손실보상 전액 부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 및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상의 범위가 손실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가 모호합니다. 특히 감염원이 분명하면서 예방·치료가 가능한 병해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감염원 불분명 또는 예방·치료 불가 시 국가의 방제명령 손실보상 전액 부담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80%, 광역지자체가 20% 비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감염원 또는 유통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병해충일 경우에 국가가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가능한 병해충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대부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2021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회에서 지방정부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과수화상병 보상은 어떻게 나가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이 8 대 2입니다.

○임미애 위원 8 대 2, 이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나무를 제거하고 이것 처리를 태우나요, 아니면 매몰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매몰을 주로 하고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소각도 하

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소각 또는 매물했을 때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수익에 따른 손실비용도 계산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손실비용에서 8 대 2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은 2를 없애고 정부가 100을 해 달라, 이거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과수화상병 말고는 다른 거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가지검은마름병, 시스터선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됐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1쪽, 연번 5번입니다.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정 사항이 위임이 아닌 재위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3쪽,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입니다.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8제5항에서 이용 종료 후 폐기의무 미이행에 대한 의무이행수단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벌칙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6쪽,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7쪽 부칙은 김선교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페이지로 와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것 보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장식 위원 그러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보고도 만약에 개정안같이 1개월 이내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다면……

○소위원장 윤준병 1개월은 좀 그렇다손 치고 정부안으로, 예를 들면 국정감사 전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1년의 결과를 가지고 하든지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범 위원 건별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되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건별로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위원님, 국제농식품협력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상대국과의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해서 이게 협상 과정에서 간소화된다는지 생략된다는지 그런 우려에 따라서 제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에 따라서 또 국제기준에 따라서 수입 병해충위험분석 절차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을 생략한다는지 간소화한다는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병해충위험분석 자체가 보고서가 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고 이게 해외에 존재하는 병해충의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그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가능성이 있는지 또 유입된다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정착된다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과학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식물 분야 이외에도 동물 분야 또 수산생물 분야가 있는데 유사입법례도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자체를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입법례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의견 보면 ‘절차의 임의·생략·간소화는 불가능’. 임의·생략하라고 한 바도 없고요,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것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묶어 가지고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전체 결과

서가 아닌 그 내용을 축약해서, ‘이번에 했더니 어떻더라’라고 축약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제가 다시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입할 때는 8단계의 위험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이만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4단계, 5단계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였고, 위험 병해충에 따라서 규제 병해충의 지정 고시, 수입금지 제외 고시를 할 경우에는 현행 국회법 98조의2에 따라서 상임위에 최종적인 결과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러분들이 위험분석한 결과는 1개월 후에 바로는 안 되더라도 8단계의 수입검사를 할 때 단계별로 그 내용의 중간보고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 가운데 단계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보충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종 위험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고시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8단계 가운데 4단계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5단계가 위험분석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4단계·5단계에서는 각각 이해관계자하고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 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것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4단계나 5단계, 우리 한국과수협회나 또 제주도감귤연합회 이런 데까지 다 공문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았어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양해해 주시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존중해 줍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1건 있는데 하시고 가시지요. 10분이면 해요.

○**강승규 위원** 빨리해요, 빨리.

3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6)

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9)
4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18)

(16시31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7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7권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 친환경농어업·유기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 포함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친환경농어업·유기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과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3쪽,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은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6쪽입니다.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위해 신규기관 설치보다는 기존 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7쪽, 육성계획 수립절차 및 포함사항 정비입니다.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의견수렴 절차를 유지하면서 육성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육성계획의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서 계획의 수립·변경 시 그 내용을, 종료 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육성계획 수립절차 및 포함사항 정비와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친환경농어업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육성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9페이지,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업·어업의 소관 부처가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소관 장관별로 설치하고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제7조의2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2쪽입니다.

인증·공시 재심사 규정의 행정기본법에 따른 정비입니다.

재심사 신청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현장 심사, 독성시험 검토,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인증·공시 재심사 규정의 행정기본법에 따른 정비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6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쪽입니다.

인증 관련 부정행위 및 벌칙 조항 구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벌칙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1회의 시정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인증 관련 부정행위 및 벌칙 조항 구분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8쪽입니다.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대상 추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이 아닌 운영 주체, 즉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대상 추가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쪽입니다.

단체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수산물 등 구매의무 신설입니다.

민간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비용·선택권·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단체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수산물 등 구매의무 신설 조항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용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 20쪽, 부칙입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승규 김성범 김용태 문금주 신장식 윤준병 이개호 이성권 이양수 이재관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임시회의록